

■ (언론 동향) 2021.8.31. “한국농어민신문” 보도

○ 농협경제지주, 계통공급용 무기질비료 구매가격 인상

- 평균 14.8%..농업인 판매가는 9.4% 올려
- 국제 원자재가격 상황 반영
- 생산업체 요청 일부 수용

농협경제지주가 급등한 무기질비료 국제 원자재가격 상황을 반영해 계통공급용 무기질비료 구매가격을 평균 14.8% 인상했다. 다만,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 판매가격은 9.4%만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무기질비료 계통공급가격 인상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계약단가 인상 요청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 요소 가격은 지난해 연말 톤당 274달러에서 올해는 8월 5일 기준, 466달러로 70% 올랐고, 염화칼륨은 같은 기간 235달러에서 460달러로 96%나 폭등했다. 지난해 연말 톤당 365달러였던 인산암모늄도 616달러로 크게 상승해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비종의 경우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한 상태다. 비료업계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무기질비료 생산량의 90%를 납품하는 농협중앙회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일부 반영한 계통공급용 무기질비료 계약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농협은 지난 6월말 농민단체, 학계, 정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비료공급 자문위원회’를 통해 비료가격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하반기 비료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세부 검토를 거쳐 최근 구매단가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 폭은 평균 14.8% 수준. 다만, 농가 부담을 고려해 농업인 판매가격은 평균 9.4%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는 평균 인상률 14.8%에서 재고물량 10만톤을 인상 전 가격으로 적용한 평가액(37억원, 4.4%)과 농협 수수료 증가분(9억원, 1%)을 제외한 수치다. 최종적인 주요 비종별 농가 판매가격(20kg 한 포 기준)은 △요소 1만600원(9250원 대비 14.6%↑) △21-17-17 복합비료 1만2400원(1만1000원 대비 12.7%↑) △맞춤형 비료 1만442원(9339원 대비 11.8%↑) △시담(가격협의)비종 1만3072원(1만2757원 대비 2.5%↑) 등으로 결정했다.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9. 1.(수)

농협은 하지만 비료업체에는 7월 19일자로 단가 인상분을 적용하되 농가에는 8월 18일부터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을 올려, 농가의 실질적인 가격 부담을 평균 4.7% 정도로 최소화 했다. 이렇게 하면 호당 평균 증가액은 5265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며, 구매가격과 판매가격 인상 시점 차이로 발생하는 손실 40억원은 농협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농협은 내년도 무기질비료 계통구매 계약 단가의 경우 원자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연말에 다시 조정할 방침이다.

비료업계에선 가격 인상 자체보다 업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 비료업체 관계자는 “농협에 요청했던 것 보다 가격 인상폭이 낮아 아쉽지만,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내년 공급물량 계약에선 가격 상승 요인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무기질비료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도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농가 입장에선 일부 생산비 부담이 생기지만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계약 물량 공급 자체가 어려워질 만큼 실제 국제 원자재가격이 폭등한 상황으로, 비료업계에선 당초 25~40% 수준의 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농협에서 농가 부담을 고려해 15% 선에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했지만 내년분 계통구매 계약 시에는 당시 원자재가격을 고려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정수 기자>

■ (언론 동향) 2021.8.31. “한국농어민신문” 보도

- ‘농어업회의소법’ 국무회의 통과
 - 국가지자체 농정과정 참여
 - 정치적 중립 의무 등 명시
 - 운영경비 지원 근거도 마련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초·광역 및 전국 농어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9. 1.(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11년째 시·군 공모를 통해 '농어업회의소 설립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현재 21개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입법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농업계에서도 농어업회의소가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농어업회의소의 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 자문·건의, 교육·훈련 등이며,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시됐다.

설립요건을 보면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경우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 및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전체 기초농어업회의소 1/5 이상 발기 및 1/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의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 대상 행정구역 수의 1/5 이상 발기 및 1/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회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경우 일반회원인 농어업인과 특별회원(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비영리법인, 농어민단체 등) 등으로 구성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업무구역이 광역시·도에 속하는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이뤄진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회의소의 기관은 대의원총회와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근거도 법안에 넣었다.

농식품부 최정록 농촌정책과장은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농어민은 물론 기존의 농어민단체도 회원으로 참여해 농어업회의소가 명실상부한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할 것"이라면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선아 기자>